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2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근거 마련	3

I. 개요

1.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2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6. 18.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개별 수검자들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민간검진을 이미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 문자·우편 등을 반복적으로 받고, 더 나아가 같은 해에 다시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중복 검진은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집행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제4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대상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 제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건강검진) ① ~ ③ (생략)	제52조(건강검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외의 건강검진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본인(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건강검진 대상제외를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외의 건강검진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2조¹⁾는 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매년 약 1,700만명이 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있고, 약 1,300만명이 암검진을 수검하고 있으며, 약 170만명~200만명이 영유아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있음.

< 건강검진 수검자 및 수검비용 현황 >

(단위: 명, 천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수	17,233,263	17,462,244	17,517,365	17,622,763
	수검비용	660,007,571	677,824,136	748,979,005	809,724,445
암검진	수검자수	13,657,239	13,931,731	13,736,838	13,453,917
	수검비용	1,193,311,779	1,246,656,534	1,425,704,893	1,433,888,148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수	2,063,937	1,769,726	1,699,141	1,701,193
	수검비용	69,601,974	60,161,402	59,005,310	75,694,58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민간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해당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그 검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공단은 민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음. 이에 이미 민간 건강검진을 수검한 경우에도 공단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하 “국가건강검진”이라 함)을 수검하도록 문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 중복 검진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에 현재 공단은 민간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음에도 반복적 수검 독려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본인이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종합검진 등 민간 건강검진을 수검한 경우에 한해 수검 제외 처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단이 실무적으로 제외 처리를 하는 것일 뿐 법률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제외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²⁾.

- 참고로, 다음과 같이 공단에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0만명이 일반건강검진 제외를, 약 124만명이 암검진 제외를 신청하였고,

2) 단, 암검진의 경우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서 이미 암을 진단받은 경우, 대장암검진 등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 등에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4조(암검진 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 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부상 및 질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암검진대상 암의 종류	부상 및 질병코드(명)
위암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C16(위의 악성신생물)
간암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대장암	C18(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C21(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유방암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암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폐암	C33(기관지의 악성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2. 이 고시에 따른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 대장내시경 검사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2025년에는 약 8만 2천명이 일반건강검진 제외를, 약 99만 7천명이 암검진 제외를 신청하였음.

<민간 건강검진 수검자 중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 현황>

(단위: 명)

검진유형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일반검진	109,908	103,979	99,231	82,227
암검진	703,505	1,442,804	1,813,780	996,633

※ 건강보험 검진대상자 중 종합검진을 사유로 검진제외를 신청한 인원

※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발체하였으며, 조화·발체 시점에 따라 변동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에 개정안은 국가건강검진 제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복검진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검진기관의 안내 방식 등에 따라 수검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³⁾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우려⁴⁾ 등이 제기되고 있어 검진기관을 통한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 참고

4) 대한의사협회 의견 참고

- 한편, 검진기관을 통한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제외 신청이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⁵⁾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검진기관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도 포함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제외 신청 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검진기관을 통한 제외 신청이 불가능하여 본인이 직접 제외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에도 보호자 등이 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포함하고 있으나,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월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건강관리 체계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질병의 단순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민간검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목적으로 내원하여 실시하는 검사항목이 검진을 대체하기 어려움에 따라 현재 제외 신청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제외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국가건강검진의 중복 수검을 방지하고 수검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국가건강검진을 갈음할 수 있는 민간검진의 인정 범위,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민간건강검진을 수검하도록 유도하여 민간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을 대체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우려와 장기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의 공공성 및 건강 형평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간 건강검진 수검자의 국가건강검진 중복 수검을 방지 및 수검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건강검진 제외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제외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는 수검자가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직접 공단에 제외 신청을 하도록 하여 신청 주체와 책임이 명확하나, 의료기관을 통한 제외신청이 가능할 경우, 수검자의 검진제외 신청 편의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신청 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처리 책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며, 민간 검진기관의 안내 방식이나 상업적

유인에 따라 수검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거나 민간검진으로 대체될 우려가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참여율 저하, 민간 건강검진 중심 구조 심화, 검진 접근성의 지역적 격차 확대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이 아닌 민간검진 실시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게 한다면, 공단은 해당 내용으로 국가검진대상자를 관리하여,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한의사협회

- 불필요한 중복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국가건강검진은 대상자 선정, 검사항목, 질 관리, 결과 통보 및 사후 관리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적 보건사업으로, 민간 건강검진과는 목적과 운영체계가 상이하므로 일부 검사항목의 중복만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을 민간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수검자와 의료기관 간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받아야 할 국가건강검진 기회를 제한하여 제도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03